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대면)교육 운영중지 및 장기 휴관으로 '20년 하반기 비대면(온라인) 교육을 무료로 시범 운영 중.

○ 평생학습관 교육생 수강료 기준을 현행화하고 수강료 면제대상을 추가 확대하여 시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평생학습관 교육 수강자에 대한 수강료 징수 항목 정비(안 제19조)

- 무료운영 교육에 대한 수강료 기준 현행화(안 제19조제2항 신설)
- 교육생 수강료 구분 세분화 및 징수금액 기준 조정(안 별지)

○ 평생학습관 수강료 면제 대상 확대(안 제20조)

-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 예정

○ 입법예고 기간 : 2020. 12. 10. ~ 2020. 12. 30.(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 예정

○ 심의회 개최일: 2021. 1.

□ 기타사항 : 별첨

○ 현행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평생학습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따른 국가유공자”를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평생학습과 ☏ 940-4447
입 안 자	평생학습과장	전 현 정
	교육운영팀장	여 영 숙
	담 당 자	이 지 영

[별표]

수강료 및 사용료(제19조 관련)

1. 교육생 수강료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기술·취미·교양 등 교육과정	1명 1개월	무료 ~ 20,000원	가. 교재비, 실습재료비는 교육생이 부담한다. 나. 교육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다. 교육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수강료의 범위에서 교육기간,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특별강좌과정	1명 1개월	무료 ~ 30,000원	

2. 기본시설 사용료

구분 / 시설명	기 준	금 액	비고
대강당	오전(08시-12시)	50,000원	가. 초과 사용료의 가산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30분 미만: 사용료의 20퍼센트 2)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사용료의 50퍼센트 3) 1시간 이상: 사용료의 100퍼센트 나. 사용일이 토요일인 경우 기준금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오후(13시-18시)	60,000원	
	야간(18시-22시)	70,000원	
	1일	100,000원	
강의실	4시간	20,000원	

3.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음향기기사용		1회 2시간	20,000원	가. 매시간 초과 시마다 해당 기준금액의 20퍼센트 초과요율만 추가 징수한다.
피 아 노		1회 2시간	20,000원	
영 사 기		1회 2시간	20,000원	
조명	일반	1회 2시간	10,000원	
	종합	1회 2시간	15,000원	

4. 냉·난방 사용료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대 강 당	1회 (2시간)	50,000원	가. 매시간 초과 시마다 해당 기준금액의 20퍼센트 초과요율만 추가 징수한다.
강 의 실	1회 (2시간)	10,000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수강료 및 사용료의 징수)	제19조(수강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평생학습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20조(수강료 및 사용료의 면제·반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교육 수강료의 경우에는 기수별 수강생 1명당 1과목에 한정한다.	제20조(수강료 및 사용료의 면제·반환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발췌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가유공자법)

[시행 2020. 9. 25] [법률 제17114호, 2020. 3. 24, 일부개정]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보훈급여금,수당)
국가보훈처(생활안정과-취업지원)
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신체검사)
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적용대상,유.가족)
국가보훈처(생활안정과-교육지원)
국가보훈처(생활안정과-대부지원)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의료지원)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28., 2011. 9. 15.>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1. 9. 15.>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개정 2008. 3. 28., 2011. 9. 15.>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개정 2008. 3. 28., 2011. 9. 15.>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9. 15., 2013. 6. 4., 2015. 7. 24., 2016. 5. 29., 2019. 12. 31.>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3. 28., 2011. 9. 15.>

⑦ 삭제 <1994. 12. 31.>

⑧ 삭제 <2000. 12. 30.>

[제목개정 2008. 3. 28., 2011. 9. 15.]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 2019. 12. 27.]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543호, 2019. 12. 27., 일부개정]

경기도 파주시(평생학습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등에 따라 파주시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파주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으로 한다)이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시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할구역 내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게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말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의 관계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시설·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6조(설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파주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학습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평생교육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위원
가. 시장
나. 평생교육업무담당국장
다. 파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파주시의회 의원 1명
나. 평생교육관련 기관·단체의 장
다.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라.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임기 및 해촉) ① 협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주재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평생교육기관에 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실무적 기능을 보완하고 평생교육기관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파주시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고, 어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실무관계자와 교육전문가로 구성하며, 간사는 평생학습팀장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심의 기능을 갖는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정보 교환
2. 평생교육 네트워크화사업 추진
3. 그 밖의 평생학습과 관련된 사항

제14조(협의회 수당)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12. 27)

제3장 평생학습관

제15조(설치)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은 시 관할 구역 내에 둔다.

③ 시장은 읍·면·동별로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학습 정책개발·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육성 보급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지역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4. 평생교육 상담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5. 평생교육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6.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7.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육성 지원
8. 소외 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9. 평생교육 통계 조사 등 관련 조사 및 자료 개발
10. 시민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행사개최 및 지원
11.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운영) ①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②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인력은 별도로 정한다.

③ 시장은 평생교육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평생교육사의 배치) 시장은 평생학습관에 법 제26조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9조(수강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교육 등을 수강하거나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별표에 해당하는 수강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사용료를 사용일 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수강료 및 사용료의 면제·반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교육 수강료의 경우에는 기수별 수강생 1명당 1과목에 한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수강료의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수강료의 반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설사용 허가를 취소할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 전액
2. 시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전액
3. 사용자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취소한 경우
   가. 3일 전까지 : 전액
   나. 2일 이전 :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제4장 보칙

제2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평생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한 관련 경비가 목적 외에 사용된 때에는 지원금의 지급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경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장은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22조(포상 등)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단체·시설 및 개인을 발굴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 과정을 수료한 시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8. 12. 28. 조례 제1471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강료 및 사용료 면제·반환 등에 관한 적용례)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수강신청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2019. 12. 27, 조례 제154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1>~<76> 생략

<77>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8>~<81> 생략

[별표]

수강료 및 사용료(제19조 관련)

1. 교육생 수강료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기술교육과정	1명 1개월	15,000원 ~ 20,000원	가. 실습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나. 교육기간이 10일 이상일 때에는 1개월로 본다.
취미교육과정	1명 1개월	15,000원 ~ 20,000원	
교양교육과정	1명 1개월	15,000원 ~ 20,000원	
특별강좌과정	1명 1개월	15,000원 ~ 30,000원	

2. 기본시설 사용료

구분 / 시설명	기 준	금 액	비고
대강당	오전(08시-12시)	50,000원	가. 초과 사용료의 가산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30분 미만: 사용료의 20퍼센트 2)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사용료의 50퍼센트 3) 1시간 이상: 사용료의 100퍼센트 나. 사용일이 토요일인 경우 기준금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오후(13시-18시)	60,000원	
	야간(18시-22시)	70,000원	
	1일	100,000원	
강의실	4시간	20,000원	

3.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음향기기사용		1회 2시간	20,000원	가. 매시간 초과 시마다 해당 기준금액의 20퍼센트 초과요율만 추가 징수한다.
피 아 노		1회 2시간	20,000원	
영 사 기		1회 2시간	20,000원	
조명	일반	1회 2시간	10,000원	
	종합	1회 2시간	15,000원	

4. 냉·난방 사용료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대 강 당	1회 (2시간)	50,000원	가. 매시간 초과 시마다 해당 기준금액의 20퍼센트 초과요율만 추가 징수한다.
강 의 실	1회 (2시간)	10,000원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0A경기파주099			
정 책 명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평생학습과		
	담당자명	이지영	전화번호	031-940-4447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0년 12월 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평생학습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제20조(수강료 및 사용료의 면제·반환 등) 제1항의 6호는 성별영향평가 항목 가운데 ①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과 관련이 있으므로, 아래의 검토사유를 참고하여 제시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20조(수강료 및 사용료의 면제·반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교육 수강료의 경우에는 기수별 수강생 1명 당 1과목에 한정한다. <중략> **6.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와 병역명문가 가족**	제20조(수강료 및 사용료의 면제·반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교육 수강료의 경우에는 기수별 수강생 1명 당 1과목에 한정한다. <중략> **※ 6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 **6.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종사하는 사람**	**Ⅰ. 병역명문가 삭제 의견 사유** 1. 성별영향평가 항목 가운데 ①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은 제·개정 자치법규 내의 ① 적용 대상에 남성, 여성, 백부, 백모, 부계, 모계와 같이, 직·간접적으로 성별을 구분하는 단어가 있는지, 있다면 이를 적용한 결과, 성별에 따른 차별을 야기하지 않는지, 또한 ② '성별에 따라 적합한 역할이 따로 있다' 등과 같이, 성별과 연결된 고정관념이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지표임 2.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

			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이고,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함. 또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2조(정의)에 의하면, ‘병역명문가’는 최소 3대째의 직계비속 남성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이거나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강료 면제 대상에서 여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3. 그러나 병역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병역명문가는 기준이 성별 편향적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남성 집단으로, 성별에 따른 차별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음 4. 또한 경기북부병무지청에 확인한 결과, 파주시 병역명문가는 47가구로 매우 적어 수강료 면제에 따른 정책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더욱이 병역명문가 구성원 수와 성별은 파악되지 않고, 신청자 47명 모두 남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결과적인 성별 배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5. 마지막으로 병역명문가를 수강료 면제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여성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사유로 병역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남성에 대해서도 차별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참고 : 1998년 여성들과 장애인 남성이 각종 군필자 가산점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1999년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위헌판결을 한 바 있음 **Ⅱ. 가족친화인증기업 종사자로의 변경 의견 사유** 1.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서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이 6대 정책과제 가운데 하나로 수립되고 ‘기업의 가족친화경영확산’을 위한 다양한 세부과제가 추진되고 있음

				2. 또한 파주시에서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발굴을 통해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를 통한 가족친화 환경 조성이 추진되고 있음 3. 따라서 수강료 면제 대상에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참고 : 최근에 제정된 관광사업소 소관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관광시설 사용료 감면기준에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포함됨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0년 12월 16일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0년 12월 09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평생학습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0-91		
자치법규명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김주연
주관부서	평생학습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이지영
평가결과 통지일	2020. 12. 3.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	-	-

□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평생학습과
	담 당	팀장 여영숙 담당자 이지영
3. 관련법령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4. 주요골자	○ 평생학습관 교육 수강자에 대한 수강료 징수 항목 정비(안 제19조) - 무료운영 교육에 대한 수강료 기준 현행화(안 제19조제2항 신설) - 교육생 수강료 구분 세분화 및 징수금액 기준 조정(안 별지) ○ 평생학습관 수강료 면제 대상 확대(안 제20조) -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병역명문가와 병역명문가의 가족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일부개정은 평생학습관 교육생 수강료 기준을 현행화 하고 수강료 면제대상을 추가 확대하여 시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자 규정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임근영(4171)	